

 <h1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 <b>공정거래위원회</b>	
보도일시	2018. 8. 21.(화) 09:10부터 보도가능	총 3쪽/ 사진 없음	
배포일시	2018. 8. 21.(화)	담당부서	법무부 국제형사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
담당과장	국제형사과장 구승모 02) 2110-3553 카르텔총괄과장 이유태 044)200-4533	담당자	검사 김남수 02) 2110-3554 서기관 김정훈 044)200-4534

##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

- 「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」에 대하여 법무부·공정위 합의안 서명 -

□ **법무부(장관 박상기)와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상조)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, 2018. 8. 21.(화) ‘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’에 서명하였습니다.**

※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,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, 8. 14. 최종합의 하였습니다.

### □ 합의문 주요 내용

#### 1. 총칙

- 법무부와 공정위는,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
  - 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, ②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

#### 2.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

-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(가격담합), 제3호(공급제한), 제4호(시장분할), 제8호(입찰담합)에 위반한 범죄(경성담합)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

### **3.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**

#### **가.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 마련**

- 1순위 자진신고자 형 필요적 면제, 2순위 자진신고자 형 임의적 감경
-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감면 가능

#### **나.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**

-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
-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

#### **다.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**

-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
-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

#### **라. 공정위 우선 조사 사건**

-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,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

#### **마. 검찰 우선 수사 사건**

-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,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 우선 수사

#### **바. 형사면책 판단**

- 자진신고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
-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 의견 최대한 존중

#### **사. 사업자에 대한 통지**

- 공정위는 행정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, 자료 누락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

#### **아. 감면취소**

- 공정위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 가능

#### **자. 비밀유지 등**

-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 별도 지정

#### **차.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**

- 공정위와 검찰은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

### **□ 전속고발제 폐지 배경**

-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민사, 행정,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, 공급제한, 시장분할, 입찰 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-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,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,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습니다.
-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하여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하였습니다.

#### □ 전속고발제 폐지 후 제도 운영 방향

-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,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시각도 있습니다.
-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.
-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,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'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,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'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.
- 또한,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.

#### □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방향

-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되어 실행되기 때문에,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,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.
-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.
-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고,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,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입니다.

- 첨부 1. 「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」  
 2. 법무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, 「국민께 드리는 말씀」